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 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 이 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 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 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 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동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와 소비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시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작)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하여 제작한다.

②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의 판매)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업무를 영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내용

제12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4] 의 쓰

⑤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와 소비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작)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하여 제작한다.

②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의 판매)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업무를 영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내용

제12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4] 의 쓰

폐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 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

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의 설치·가동시부터 시행한다.

③(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업장폐기물(음식물쓰레기)배출자 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 제1항)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16조1항)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다.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등)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5 5 10	10 10 15	20 2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10	50 20	10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관련)	30	50	1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신 고 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전 화 번 호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전화)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 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 용 계획	위탁재활 용 량	재활용 방 법	위 탁 업 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 전 화 번 호	
		kg/월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 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 자	누 계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 kg/년							
처리 실적							
자가처리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감량처리	처리능력	연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전화)	
	kg/일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주시장 귀하							